

[별표 5] 감지부 자동작동시험(제24조의2 관련)

1. 소화시험설비

가. 시험모형의 크기는 (가로 3 m 이상 × 세로 3 m 이상 × 수직방향 연동 설치 시 최대설치높이)로 체적은 최소 27 m³ 이상이어야 한다.<개정 2024.7.25.>

나.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.09m²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설치하고 다른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개구부의 반대편 천장과 인접한 벽체에 설치하고 별도의 과압배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.

다. 자동소화장치는 수직방향 연동 설치 시 최대설치높이에 해당하는 지점에 설치하되 방출구 및 감지부는 시험실 천장으로부터 30 cm 이내에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도록 설치한다.<개정 2024.7.25.>

라. <삭제 2024.7.25.>

마.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하며, 소화약제 대신 질소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충전하여 시험할 수 있다.

2. 시험방법

가. 시험에 사용되는 연료는 n-헵탄을 이용한다.

나. 소화시험은 0.25 m²의 정사각형, 높이 100 mm, 두께 6 mm의 철제모형에 12.5 L의 n-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mm 높이에 위치하게 하고 소화시험실 중앙에 설치하고 실시한다.

다.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 및 사용상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 후 각 1회 시험을 실시한다.<개정 2024.7.25.>